

2024년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하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기초단체장 4개 선거구
-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 접수기간 : 24.7.29(월) 15:00 ~ 24.8.1(목) 18:00 / 4일간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5. 심사비 :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 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
※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1/2 감액,
단,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호	접수 서류	비고
1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별도 서식 1호>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발급
5	당적증명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당 홈페이지 발급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당 홈페이지 발급

호	접수 서류	비고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부 ※ https://theminjoo.kr/academy	당 홈페이지 발급
8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9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10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이체 확인증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관공서 발급
12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부	관공서 발급
13	재산신고서 1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별지 제7호〉
14	최근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부	〈별도 서식 2호〉
15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1부	〈별도 서식 3호〉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별도 서식 4호~8호〉
17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파일	사진 파일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2년 6월 1일 이후 기간설정)→전체이수증 출력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필수)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10.16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0030,0021)

2024.07.29.

10.16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